

## 전자금융거래이용약관

### 제1조 (약관의 적용)

- ① 이 약관은 홍콩상하이은행(이하 "은행"이라 함)과 전자금융서비스(컴퓨터, 전화기, CD/ATM기, 휴대폰, PDA등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은행거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서비스"라 함)를 이용하는 고객(이하 "이용자"라 함) 사이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에 적용한다.
- ② 서비스의 이용에 관하여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이하 "기본약관"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 제2조 (서비스 종류)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전자적 장치를 통한 각종 조회, 자금이체, 계좌 신규개설 및 대출 등의 서비스이며, 구체적인 서비스 종류는 이용매체를 통하여 안내한다.

### 제3조 (서비스의 개시)

- ① 이 서비스는 이용자가 은행에 소정의 이용 신청서를 제출하고 은행이 이를 승낙 후 이용자가 직접 각종 비밀번호를 입력함으로써 개시된다.
- ② 이용자는 이용 업무에 따라 별도의 약정 또는 약관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개별약정을 체결하거나 약관동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 (계좌이체 한도)

- ① 이용자는 <별표 1>에서 정한 바와 같이 기본한도 내에서 개별이체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폰뱅킹의 경우, 은행이 <별표 1>에서 정한 이체한도를 이용자별 개별이체한도로 설정한다.
- ② 이용자는 제1항에서 설정한 개별이체한도 내에서 거래할 수 있다. 단, 법인의 경우 인터넷뱅킹 1회이체한도는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이용자가 인터넷뱅킹 이용 신청서 작성 시 <별표 1>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이때 이용자가정한 1회이체한도는 1일이체한도 이내여야 한다.
- ③ 이용자가 1일 및 1회 자금이체 최고한도를 별도 약정하지 않은 때에는 은행이 정한 한도 내에서 계좌이체를 할 수 있다.
- ④ 이체한도 변경은 이용자가 영업점에 서면으로 신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터넷뱅킹의 경우 이용자가 이체한도를 축소하고자 할 경우, 개인고객은 본인의 책임으로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이체한도를 직접 축소할 수 있으나, 기업고객은 서면에 의하여 계좌이체 한도의 하향을 요청한다.
-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 및 기타 관계규정에서 한도를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은행의 기본한도 및 이용자의 개별이체한도는 해당 법령 또는 규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약정된다.
- ⑥ 은행은 제1항의 기본한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그 변경시행일 1개월 전에 영업점 및 게시 가능하거나 기타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에 1개월간 게시한다.

### 제5조 (서비스 이용 시의 본인확인 방법)

① 은행은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시마다 서비스 종류별로 은행이 요구하는 해당 항목을 이용자가 입력했을 때 동 내용이 은행에 등록된 것과 일치할 경우 이용자 본인으로 간주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1. 폰뱅킹

조회서비스 : 주민등록번호 또는 고객번호(PBN), 비밀번호

이체서비스 : 주민등록번호 또는 고객번호(PBN), 비밀번호, 일회용비밀번호

2. 인터넷뱅킹

조회서비스 : 이용자 ID, 인터넷뱅킹비밀번호, 일회용비밀번호

이체서비스 : 이용자 ID, 인터넷뱅킹비밀번호, 일회용비밀번호, 공인인증서비밀번호

3. ATM : ATM카드, ATM카드비밀번호

② 이용자가 소정의 신청절차를 거쳐야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기본약관 제2조 제15호의 접근매체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이미 은행에 등록되어 있는 것 또는 은행이 계산한 것과 일치할 경우에 이용자 본인으로 인정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 제6조 (기업고객 이용자의 생성, 변경, 및 권한설정)

① 주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부이용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부이용자의 접근권한과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부이용자는 은행이 지정한 본인확인 절차 이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② 기업고객은 최대 2명의 주이용자 및 48명의 부이용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주이용자는 부이용자의 서비스 이용항목 자체를 제한할 수 없으나 이용 가능한 거래계좌 및 서비스의 이용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 제7조 (출금계좌)

① 자금이체에 이용할 최초 출금계좌는 은행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출금계좌 추가등록은 서비스에 따라 적용을 달리할 수 있다.

② 출금계좌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이용자 본인명의로의 원화 및 외화예금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의 요청에 의해 보안계좌로 설정된 계좌는 통장 또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의한 거래만 가능하며 기타 전자적 장치에 의한 거래 목적의 출금계좌로 지정할 수 없다.

### 제8조 (거래지시의 처리기준)

기본약관 제12조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거래지시를 처리한다.

① 예약이체의 경우 필요한 이체자금은 이체지정일의 은행에서 정한 이체처리 시간 전에 지급계좌에 입금되어야 하며, 이체실행은 1회의 시간으로 하고 이체불능 건에 대한 재처리를 하지 않는다.

② 이체지정일에 복수의 예약이체 의뢰가 있을 때에는 은행이 내부적으로 정한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 제9조 (계좌의 개설과 해지)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통해 계좌를 신규 개설할 수 있다. 단, 실명확인 된 근거계좌를 보유한 이용자

가 지정한 근거계좌에서 인출하여 근거계좌와 연결된 신규계좌 개설만 가능하고, 연결된 신규계좌에서 최초인출 시 또는 근거계좌 해지 시에는 실명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만 가능하다.

② 서비스를 통해 신규 개설한 계좌의 해지는, 이용자가 영업점을 방문하여 서면 신청 하고 은행이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절차를 마친 후 가능하다.

③ 서비스를 통해 신규 개설한 계좌는 인감 또는 서명신고를 생략하고 통장발급을 하지 않으며, 통장발급을 원할 경우는 영업점을 방문하여 이용자 본인확인절차를 마친 후 발급 할 수 있다.

④ 신규개설이 가능한 예금, 적금 및 신탁의 종류는 은행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한다.

⑤ 이용자가 아직 납부하지 않은 수수료가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를 해지하더라도 은행이 수수료 자동이체계좌의 해지를 제한할 수 있다.

### 제10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은행은 다음의 경우에 서비스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① 기본약관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의 각 호에 해당 될 때

② 폰뱅킹비밀번호, ATM카드비밀번호의 경우 연속 3회,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비밀번호, 일회용 비밀번호의 경우 연속 5회 등 이용자 본인확인을 위한 입력사항을 은행이 정한 일정 횟수 이상 잘못 입력하였을 때

③ 야간 또는 비영업일 등 은행이 따로 정하는 시간 (은행이 따로 정하는 시간은 이용매체를 통하여 안내한다.)의 경우

④ 수수료가 납부되지 않은 때 및 이용자가 은행이 정하는 기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때

⑤ 기타 이용자가 약관 등을 위반함으로써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⑥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사기거래라고 의심될 때 (예를 들어, 접근매체 등의 위조, 변조, 도용 등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

### 제11조 (서비스 제공시간)

은행의 서비스 제공시간은 <별표 2>와 같으며, 서비스별 구체적인 이용시간은 은행 홈페이지 및 서비스 별 전자적 장치를 통해 안내한다.

### 제12조 (수수료)

① 서비스 이용수수료는 <별표 3> 과 같으며 동 수수료는 서비스실행과 동시에 출금되는 계좌에서 이체자금과 함께 자동 인출한다. 다만, 별도의 약정이 있을 경우에는 일정기간에 발생한 수수료를 미리 지정한 날짜에 한꺼번에 인출할 수 있으며 은행에서 정한 일부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는 매월 일정한 날에 이용자가 지정한 계좌에서 자동 출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용수수료는 영업점 창구 및 이용매체를 통하여 안내한다.

### 제13조 (변경, 사고사항의 신고)

① 이용자가 비밀번호, 출금계좌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은행에 등록한 사항을 변경 또는 추가하고

자 하는 때에는 소정의 신청서를 영업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은행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용자 본인의 책임으로 서비스 이용매체를 통하여 직접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다.

② 각종 비밀번호의 조회나 확인은 불가능하며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 또는 접속장치의 분실·도난, 비밀번호·암호의 누설 등 사고 발생시에는 곧 영업점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때는 전화 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다음 영업일 안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제14조 (서비스 계약의 해지)**

① 이용자가 본 서비스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이용자는 영업점에 서면으로 계약 해지를 요청함으로써 본 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이용자가 거래계좌를 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계좌에 연결된 모든 서비스도 동시에 해지된다.

③ 출금계좌가 1개만 등록된 이용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은행은 이용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다.

1. 은행이 출금계좌의 예금을 상계하려는 경우
2. 대리인이 출금계좌의 통장·인감과 위임장을 제시하고 기본계좌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 **제15조 (비밀번호의 관리)**

① 이용자는 등록된 비밀번호(폰뱅킹, 인터넷뱅킹, ATM카드, 공인인증서)는 타인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정기 또는 수시로 변경하여 타인이 쉽게 알수 없도록 최대한 주의의 의무를 다한다.

② 비밀번호의 조회나 확인은 할 수 없으며, 제10조제2항의 경우에는 은행에 비밀번호 변경을 위한 서면 신청을 한 후 다시 등록한다. 단, 공인인증서는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재발급 받아야 한다.

#### **제16조 (약관의 변경)**

은행이 이 약관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변경시행일 1개월전에 게시 가능한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전자적 장치나 기타 방법으로 통지한다. 변경내용을 게시한 후 시행일 전영업일까지 이용자로부터 이의가 도달하지 않으면 이용자가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 **부칙**

####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08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 **제3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1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기본한도>

(단위: 만원)

구 분			기 본 한 도
인터넷뱅킹	개인	1회	5,000
		1일	5,000
	법인	1회	50,000
		1일	500,000
폰뱅킹	개인	1회	5,000
		1일	10,000
	법인	1회	10,000
		1일	50,000
ATM	인출한도	1회*	40
		1일	500
	이체한도	1회	600
		1일	1,000

\* 타행 ATM에서 현금 인출 시에는 해당 타은행의 거래한도가 적용됩니다.

<별표 2>

<이용시간>

개인 및 법인

서비스 채널	이용 서비스	거래 시간	비고
인터넷뱅킹	조회, 당행이체, 정기예금 개설	24시간*	공휴일 포함
	타행이체	00:00~23:30*	공휴일 포함
	해외송금	09:30~15:00	토요일/공휴일 제외
	외국환 타행이체	09:30~15:00	토요일 공휴일 제외 법인만 해당
폰뱅킹	조회, 당행이체, 사고접수	24시간*	공휴일 포함
	타행이체	00:00~23:30*	공휴일 포함
ATM	조회, 당행출금, 당행이체	24시간*	공휴일 포함
	타행출금, 타행이체	00:00~23:30*	공휴일 포함

\* 야간 시스템전환작업 중에는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별표 3>

<이용 수수료>

서비스 채널	거래 종류			수수료
인터넷뱅킹	개인	당행이체		면제
		타행이체		면제
		해외송금	1백만원 이하	건당 7,500원
	법인	당행이체		면제
		타행이체		건당 500원
		외국환 타행이체		건당 10,000원
		해외송금	1백만원 이하	건당 7,500원
			1백만원 초과	건당 30,000원
폰뱅킹	개인 및 법인	당행이체		면제
		타행이체 (ARS)		건당 500원
ATM	개인 및 법인	당행인출		면제
		타행인출		건당 1,000원
		당행이체		면제
		타행이체	1백만원 이하	건당 1,500원
			5백만원 이하	건당 2,000원
			5백만원 초과	건당 3,000원
ATM카드	개인	발급		건당 2,000원